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1회 제1차 정례회

**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집행부 발의】
검토보고서**



2020. 6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0. 6. 9.
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경제지원과장)
- 제출일자: 2020. 5. 28.
- 회부일자: 2020. 5. 28.
- 검토기간: 2020. 5. 29. ~ 6. 4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난사태 발생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특례보증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
 - 보증재원 및 특례보증 절차, 방법 등 관련내용 추가(안 제6조)
 - 특례보증 대상 관련조항 신설(안 제7조)
-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
 - 이차보전 지원범위 및 절차, 방법 등 관련조항 신설(안 제8조)
 - 지원중지 및 환수 관련조항 신설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타사항
 - 입법예고(2020. 5. 1. ~ 5. 21.) 결과: 의견 없음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여 민생을 안정화 하고자 함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※ 붙임: 관계 법령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6652호, 2020.2.21. 시행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